

변경 대비표

2021.10.29

○ 펀드명 :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투자신탁4호[채권]

○ 정정사유 :

- 1)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
- 2)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
- 3) 투자위험등급 변경 (5등급→6등급)
- 4) 법 개정사항 반영

○ 상세내역 :

[집합투자규약]

변경 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0조(기준 가격 산정 및 공고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제32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대차대조표</u> 2.~3. (생략) <p>② (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재무상태표</u> 2.~3. (현행과 같음)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	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
제39조(보수)	<p>① (생략)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

	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4조(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④ (신설)	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
제45조(투자 신탁의 해지)	①~③ (생략) ④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	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변경 항목	변경 전	변경 후
1)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	[요약] - 위험등급 변경	
2)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	- 투자비용	
3) 투자위험등급 변경 (5등급→6 등급)	- 투자실적추이 - 운용전문인력	
4) 법 개정사항 반영	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(세전 기준) 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

	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 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나. 수시공시</p>	
[요약정보] 투자비용	[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] <신 설>	[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] 총보수 · 비용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 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: X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이 0.52%이므로 6등급 중 낮은위험(5등급)으로 분류됩니다.	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이 0.47%이므로 6등급 중 매우낮은위험(6등급)으로 분류됩니다.
12. 기준가격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[산정방법]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]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	[산정방법]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]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	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 재산에 대한 결산서류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자산운용보고서)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,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	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 재산에 대한 결산서류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자산운용보고서)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,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나. 수시공시	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. -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: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	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. -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: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

[간이투자설명서]

변경 항목	변경 전	변경 후
1)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2) 기업공시서식	[요약] - 위험등급 변경 - 투자비용	

개정 반영 3) 투자위험등급 변경 (5등급→6 등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실적추이 - 운용전문인력 	
[요약정보] 투자비용	[투자자가 부담하는 <u>수수료 및 총보수</u>] <u><신 설></u>	[투자자가 부담하는 <u>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</u>] <u>총보수 · 비용</u>